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5. 12 선고 2020가단961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박연진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4. 14.

판 결 선 고 2021. 5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7,928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D에게 위 채권 중 17,928,000원을 양도하고 별지 기재 임차목적물(이하 ‘이 사건 상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인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D는 2018. 8. 28. 이 사건 상가(소유자 E)에서 상호를 'F식당(백석점)', 개업 연월일을 '2018. 9. 1.'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9. 4.경부터 2019. 5. 22.까지 D에게 17,928,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,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. 원고를 D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. 12. 11. 승소판결을 받았다.

다. 피고는 2019. 10. 28.경 E와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,000만 원, 차임 월 200만 원, 기간 2019. 10. 12.부터 2024. 10. 12.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9. 11. 8. 'G'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상호를 'H식당'으로 변경한 후,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~5호증, 을 1,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이 법원의 일산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D의 채권자인데,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한 것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'라 한다)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.

3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(그 법률행위의 시기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다)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박광민

[별지]

채권의 표시

임차목적물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 (지번 주소 : 경기도 고양
시 일산동구 J) 1층

소유자 : E (주소 : 서울 구로구 K L)

위 부동산(건물)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계약 종료나 해지 시 발생하는 임차보증
금반환채권

